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##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19-85
--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19. 07. .  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### 1. 개정이유

지방자치법 제116조2(자문기관의 설치 등)제2항 “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”는 규정에 따라 동일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두 개의 조례 중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 경제 기본 조례」의 “사회적경제위원회”로 통폐합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활동과 사회적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용어 정의 명확성 확보(안 제2조)
- 나. 목적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별도 운영에 따른 비효율성 해소 (안 제3조)
- 나. 위원회 통폐합에 따른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관련 규정 삭제 (안 제4조 ~ 제9조)

### 3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#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116조2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- 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사항

- 1) 입법예고 : 2019. 5. 30. ~ 2019. 6. 19.(제출된 의견 없음)
- 2) 기획예산과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: 해당없음
- 3) 기획예산과의 위원회 사전심사 결과 : 원안동의
- 4) 가정복지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: 원안동의
- 5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: 원안동의
- 6)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·규칙심의회 심의·의결(2019.7.9.)

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###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제2호 중 “제11조에 따라”를 “각 중앙부처의 장관, 서울특별시장,”으로 한다.

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”를 “심의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」에서 규정하는 사회적경제위원회에 상정 한다”로 한다.

제4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"예비사회적기업"이란 제1호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의 제공, 취약계층에의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장차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으로 <u>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이 지정한 기업</u> 을 말한다.	2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각 중앙부처의 장관, 서울특별시장, ----- -.
3. · 4. (생 략)	3. · 4. (현행과 같음)
제3조(위원회 설치)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(이하 "사회적기업 등"이라 한다)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<u>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(이하 "위원회"</u> 라 한다)를 둔다.	제3조(위원회 설치) ----- ----- ----- <u>심의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」에서 규정하는 사회적경제위원회에 상정한다.</u>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
제4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

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  
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부구  
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 
중에서 호선한다.

② 위원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 
소속 공무원, 관계 행정기관의  
공무원 및 사회적기업 등에 대  
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  
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 
위촉한다.

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  
되,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 
다만,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 
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 
한다.

제5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

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  
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  
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 
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 
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6조(회의) 위원회의 회의는 재

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 
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

<삭 제>

<삭 제>

<삭 제>

으로 의결한다.

제7조(간사)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사회적기업 육성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.

제8조(수당 등)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9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<삭 제>

<삭 제>

<삭 제>

**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**

**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**

가.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

**2. 미첨부 근거 규정**

가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

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

(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서  
총3억원 미만인 경우)

**3. 미첨부 사유**

가.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

**4. 작성자 : 기획경제국 일자리경제과 방은영(☎ 3153-8594)**